

교양교육센터 규정

제정 2022.09.01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더:함교양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양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조직과 기능) ① 본 센터는 교양교육을 위한 정책연구, 기초학습 역량지원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.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(개정 2023.11.20)

1. 대학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양교육과정 연구, 개발
2. 교양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계획 수립
3. 기초학습 역량지원에 대한 사항 (개정 2023.11.20)
4.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 교과/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(개정 2023.11.20)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② 본 센터는 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3조 (교양교육운영위원회) ①본 대학의 교양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두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 (개정 2023.11.20)
2. 위원회는 더:함교양대학 부학장 1인, 원격교육지원센터장, 교육성과관리센터장, 학습역량 지원센터장, 학생IR센터장, 더:함교양대학 소속 팀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, 학생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 10인 내외로 구성하고, 1인의 간사를 둔다. (개정 2023.11.20)
3. 내·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.
4.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더:함교양대학장이 임명한다.
5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6.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기당 1회 이상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7.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양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2. 교양교육의 선진화 방안
3. 기초학습 역량지원에 대한 사항 (개정 2023.11.20)
4.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 교과/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(신설 2023.11.20)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(개정 2023.11.20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11.20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